

ESG Monthly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 확정

ESG 공시 주요 내용 요약

- 지난 7월 8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함.
- 2월 발표한 초안 대비 적용 대상과 일정이 대폭 확대됨
- 2028년(FY2027)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 의무화를 적용함. 2029년(FY2028)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후에는 2조원 이상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 공시 과정 없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추진함
-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서 3년간 면책을 적용하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됨
- Scope 1·2만 우선 의무화하되, Scope 3는 시행을 3년 유예함. 수출 주력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Scope 3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8년까지 마련할 예정임

2028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 정부와 여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함. 2021년 처음 정부가 일정을 제시한 뒤로 5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초안 대비 공시 의무화 적용대상과 일정이 대폭 확대됨. 당초 2028년(FY2027) 연결자산 총액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0조원 이상으로, 2029년(FY2028)에는 5조원 이상으로 기준을 크게 낮춤. 2030년(FY2029) 이후는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한 뒤, 2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다만, 공시 첫 해에는 연결기준 자산·매출이 10% 미만인 중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를 면제함. 공시 제도 확정으로 공시 대상기업이 2028년 107개사, 2029년 157개사로 늘어나며, 2030년 2조원으로 추가 확대 시, 259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거래소 공시 단계 없이 바로 법정공시로 직행

- 2월 초안은 거래소 공시를 먼저 도입한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2단계 방식을 제시했으나, 확정안에서는 2028년(FY2027)부터 곧바로 법정공시(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함. 공시 시점도 3월말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공시와 일치시켜 적시성과 활용도를 제고함.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초 배출권거래제 결산시점(8월)에 맞춰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배출량 검증기관의 검증수치를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3월말에 공시하는 것으로 확정함

면책 내용은 초안보다 확대

- 거래소 공시 과정 없이 사업보고서로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면책 관련 내용은 초안보다 확대됨. 예측, 추정정보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등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서 3년간 면책을 적용함.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됨

Analyst 이화진 hlee@hmsec.com
RA 신세영 syshin@hmsec.com

- 예측, 추정정보 및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을 면책하고, 형사책임도 배제하는 제도적 면책을 도입함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Scope 3는 3년 유예

-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되, 세부기준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임. 제도 초기 부담을 감안하여 Scope 1·2, 거버넌스, 위험관리 등 한정된 정보에 대해서만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시함

- Scope 3는 2월 초안과 동일하게 공시대상별로 3년을 유예하여 2031년부터 적용함.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 범위에서 제외됨. Scope 3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주력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8년까지 마련할 예정임

기후공시부터 의무화, 그 외 ESG 주제는 선택 공시

-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를 먼저 의무화하고, 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항목은 기업의 선택공시로 추진함. 내부탄소가격(기업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 물소비량 등 산업별 지표는 선택공시를 허용함

ESG 공시 확정에 따른 기업 영향

① 공시 대상 확대로 중견기업, 금융기관이 초기부터 포함

- 자산 기준이 30조원에서 10조원으로 낮아지면서, 10~30조원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이 신규로 공시 대상에 포함됨

-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중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총 84개사(FY2024 기준)로, 공시 적용 예정인 기업 107개사(FY2025 기준)의 78.5% 수준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경험이 없는 기업은 올해 안에 관련 조직 정비, 인력 확보, 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 ESG 공시 인프라를 갖춰야 함

② '배출량 측정' 중심에서 '기후리스크 대응' 중심으로 전환

- 과거에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공시의 초점이었다면,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업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기재해야 함.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시나리오 분석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됨

- 기존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중 연결자산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곳은 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기업이 연결자산 기준으로 배출량 재산정이 필요함

③ 고탄소 다배출 업종 등 기업의 부담 증가

-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등 고탄소 다배출 업종의 경우,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합성연료 전환 등 업종별 기술전환 로드맵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나리오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해외 사업장 배출량과 원료 조달 등 Scope 3 산정을 위한 부담이 증가함

-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은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반영해야 하며, EU CBAM 적용 기업은 CBAM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까지 반영이 필요함

〈표1〉 국내 ESG 공시 제도 추진경과

시기	내용
2021. 1월	금융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일정 제시
2021. 8월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
2022. 12월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한국회계기준원 내 KSSB 설립,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 착수
2024. 4월	KSSB,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2026. 2월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초안 발표
2026. 7월	금융위·여당(당정협의회),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 발표

자료: 금융위, 한국회계기준원, 현대차증권

〈표2〉 ESG 공시 주요 변경사항

항목	2026. 2월 초안	2026. 7월 확정안
적용 대상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2028년, FY2027)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2028년, FY2027)
공시 방식	2단계 (거래소 공시 → 법정공시)	법정공시
공시 시점	사업보고서와 동일 시점 공시(3월말) (단,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 공시)	사업보고서와 동일 시점 공시 (배출량 정보도 3월말 공시)
면책 범위	예측, 추정정보	3년간 공시정보 전체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대상 제외
Scope 3	2031년부터 공시 (3년 유예)	2031년부터 공시 (3년 유예)
제3자 인증	초기 자율적 인증 (단계적 의무화)	2030년부터 의무화

자료: 금융위, 현대차증권

〈표3〉 ESG 공시 확대 계획

연도	연결자산 기준	대상 기업수	비고
2028년(FY2027)	10조원 이상	107개	법정공시, Scope 1·2 우선
2029년(FY2028)	5조원 이상	157개	적용 대상 확대
2030년(FY2029)	2조원 이상	259개	시행 평가 후 확대 검토

주: FY25 자산매출액 기준

자료: 금융위, 현대차증권

〈표4〉 배출권거래제와 ESG 공시 대응 비교

	배출권거래제	ESG 공시
산정 범위	사업장 단위 기준 (국내 배출시설만 측정, 보고)	연결재무제표 기준 (해외 사업장, 관계사 배출량 포함)
배출 범위	Scope 1·2	Scope 1·2·3
산출물 성격	배출량(확정치)	기후리스크(전망치)
산정 자료	배출계수, 활동자료, 가동률 등	재무영향의 정량화 (배출권 가격 상승시 영업이익 영향, 전환투자 비용, 퇴역자산 분석 등)
적용 방법론	배출량 MRV 지침	1.5℃, 2℃ 등 시나리오
검인증	검증기관의 명세서 검증	세부기준 미정
이해관계자	기후부, GIR	투자자, ESG 평가기관

자료: 현대차증권

〈표5〉 기후공시 기준 주요 내용

항 목	내용
거버넌스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감독하기 위한 체계
전략	기후로 인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 재무에 미치는 영향
위험관리	기업이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비율,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표, 기후 관련 목표

자료: 금융위, 현대차증권

〈표6〉 Scope 3 산정 지원을 위한 수출 주력 15개 업종(가이드라인 개발 대상) 목록

	업종
개발 완료	이차전지, 철강, 석유화학, 석유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개발 진행중	조선, 바이오
개발 예정	자동차, 차부품, 일반기계, 무선통신, 섬유, 가전, 컴퓨터

자료: 금융위,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이화진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